

# 강제수사

## 1. 강제처분과 강제수사

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 하고,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을 강제수사라고 한다.

## 2. 강제수사의 종류

체포영장에 의한 체포, 긴급체포, 현행범인의 체포, 피의자의 구속, 압수 · 수색 · 검증, 증거보전, 증인신문의 청구, 통신제한조치, 수사상의 감정유치, 감청, 사진촬영, 기타 감정에 필요한 분석



# 체포

## 1.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

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 함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말한다. 체포는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처분으로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

## 체포의 요건

### 범죄혐의의 상당성

-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

### 체포사유

-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.

### 체포의 필요성

- 소극적 요건으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하여서는 안된다.

## 1) 체포의 법적 절차

- ① 검사의 체포영장의 청구
- ② 체포영장의 발부
- ③ 체포영장의 집행
- ④ 집행후의 절차
- ⑤ 체포후의 조치의 과정을 거친다



## 2) 실무상 체포영장에 의한

### 체포절차

- ① 체포영장신청서작성
- ② 체포영장신청부기재
- ③ 체포영장신청(경찰)
- ④ 체포영장청구(검찰)
- ⑤ 체포영장발부(판사)
- ⑥ 체포영장제시 및 집행
- ⑦ 범죄사실 등 고지
- ⑧ 체포영장집행원부기재
- ⑨ 체포통지(24시간이내)
- ⑩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 
(48시간 이내)



## 2. 긴급체포

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 
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.



## 긴급체포의 요건

### 범죄의 중대성

- 법정형이 사형,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

### 체포의 필요성

-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
-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.

### 긴급성

-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

## - 긴급체포의 절차

① 긴급체포 → ②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→ ③ 긴급체포서 작성 → ④ 긴급체포원부 기재 → ⑤ 긴급체포승인건의 → ⑥ 긴급체포통지 → ⑦ 구속 영장 신청 또는 석방

## -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

. 법원에 대한 통지의무

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는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



## · 서류 열람 등사권

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. 법정대리인 . 배우자 . 직계존속 .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한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.

## · 재체포의 제한

현행 형사소송법은 ‘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없이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’고 규정



### 3. 현행범인 체포

현행범이란 혐의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

현행범인	범죄의 '실행 중' 이거나 '실행 직후' 인 자
준현행범인	범인으로 호창(呼唱)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
	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
	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자
	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



## **- 체포의 요건**

### **1) 범죄의 명백성**

**피체포자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어야 한다**

### **2) 체포의 필요성**

**체포사유가 있어야 한다**

### **3) 비례성**

**현행범 체포의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**



## – 현행범인 체포절차

### 1)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경우

① 범죄사실 등 고지 → ②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→ ③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→ ④ 체포통지 → ⑤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의 절차

### 2)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

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현행범인 인도 → ② 범죄사실 등 고지 → ③ 현행범인인수서작성 → ④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→ ⑤ 체포통지 → ⑥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의 절차



## 4. 피의자의 구속

### 1) 피의자 구속이란?

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

구속하는 것을 말하며,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는다.



## 2) 구속의 요건

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.

-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
-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
-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

### - 경미범죄

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



### 3) 구속의 절차

#### (1) 사전 구속영장

㉠ 구속영장신청서 및 신청부 작성 → ㉡ 영장신청, 36시간 이내  
→ ㉢ 영장청구, 48시간 이내 → ㉣ 구인장 발부 → ㉤ 영장실질심  
사 → ㉥ 영장발부 → ㉦ 영장제시 및 집행 → ㉧ 구속영장 집행원  
부 기재 → ㉨ 구속통지, 24시간 이내



## (2) 사후 구속영장

㉠ 구속영장신청서 및 신청부 기재 → ㉡ 영장신청, 36시간 이내  
→ ㉢ 영장청구, 48시간 이내 → ㉣ 구속영장실질검사 → ㉤ 영장  
발부 → ㉥ 영장제시 및 집행 → ㉦ 범죄사실 등 고지 → ㉧ 구속영  
장 집행원부 기재 → ㉨ 구속통지, 24시간 이내



- 구속영장의 신청 및 청구절차

사범경찰관이 신청 → 검사의 청구 → 법원의 발부 → 집행

-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서류

체포영장

긴급체포서  
↳

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



- 체포, 긴급체포,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

-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

청구된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

것

형사소송법 : 「체포영장에 의한 체포」 「긴급체포」 「현행범인의 체포」 → 의무적 > 다음날까지 심문

- 미체포 피의자

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

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

-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방법과 절차

㉠ 피의자의 출석

심문기일지 통지는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

㉡ 심문의 방법

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㉢ 국선변호인 선정

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



- 구속영장 집행 및 집행 후의 절차

- 피의사실 등의 고지

상대방에게 구속영장을 제시

① 범죄사실 등 고지 → ② 구속의 이유 → ③ 변호인선임권 및

변명할 기회를 준 후 → ④ 구속

- 구속의 통지

형사소송법 : 지체없이

범죄수사규칙 : 24시간이내



- 송치 및 구속기간

- 체포 또는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권 종결

- 검사 : 피의자의 인치권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공소제기 ,

아니면 석방

- 구속기간 연장 : 10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 허용



## 체포

###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

요건	1) 범죄혐의의 상당성 2) 체포사유 - (1)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 우려, (2) 경미범죄 특칙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
체포구속절차	1) 체포영장의 제시      2) 체포이유 등 고지 3) 긴급진행
체포구속 후 절차	1) 체포의 통지      2)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 3) 피의자 석방(검사지휘필요)



## 체포

### 연행범체포

요건

- 1) (준)연행범인
- 2) 범인의 명백성
- 3) 경미범죄제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

체포구속절차

- 1) 체포이유 등 고자
- 2) 연행범인 체포서 또는 인수서 작성

체포구속후

절차

- 1) 체포의 통지
- 2)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
- 3) 피의자 석방(검사지휘 필요치 않음)
- 4) 석방보고

기간

48시간

## 구속

<p>요건</p>	<p>1) 범죄혐의의 상당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주거부정          3) 도망    4)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         5) 경미범죄의 제한 주거가 없는 경우</p>
<p>체포구속절차</p>	<p>1) 구속영장의 제시          2) 구속이유 등 고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) 긴급집행</p>
<p>체포구속후절차</p>	<p>1) 구속의 통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) 피의자 석방(검사의 승인)          3) 석방보고</p>
<p>기간</p>	<p>1) 경찰 10일          2) 검찰 10일 (10일내 1차 연장가능)</p>

— 재구속의 제한

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 
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



#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

## 1. 압수 수색의 의미

압수	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, 압류와 영치, 제출명령의 세 가지 내용으로 한다
수색	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 행해지는 강제처분을 말한다

## 2. 압수의 종류

압류	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	영장에 의한 압수
영치	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	임의제출
제출명령	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(법원)	



### 3. 압수 수색의 요건



### 4. 압수 수색의 절차



## 5. 압수·수색의 제한

- **오체물의 압수**
- **근사상 비밀**
- **공무상 비밀**
- **업무상 비밀**
- **야간집행제한**
- **공용, 군용항공기 등에서의 책임자의 참여**
- **주택주 등의 참여**
- **여자의 신체수색**



## 6.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·수색

- 체포·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
- 체포·구속현장에서의 압수·수색·검증
-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압수·수색·검증
-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·수색·검증
-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·수색·검증



## 7. 압수물의 처리

- 자청보관의 원칙
- 위탁보관과 폐기처분
- 대가보관
- 환부와 가환부

- 환부 : 압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수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고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
- 가환부 : 압수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피압수자나 피해자에게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.



## b. 수사상의 검증

검증이란 사람, 물건, 성질,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

### 1) 신체검사

- 절차 :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관 당하는 자의 성별, 연령,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
-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여자



## 2) 체내 신체검사

- 체내강제수색(구강, 항문 내 수색)
- 강제채뇨. 강제채혈
- 연하물의 강제배출



## 7.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

1) 통신제한조치 : 범죄를 계획,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최후방법으로 검열과 감청을 실시하는 것

### 2) 종류

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이루어진다



### 3)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

#### ① 범죄혐의

통신제한조치는 제한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

#### ② 보충성

“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,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



#### 4)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

##### ① 신청. 청구. 발부

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고,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

#####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

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,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



## 5) 통지

### ① 통지시기

#### . 사법경찰관

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

#### . 검사

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,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

## ② 통지유예

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유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



## 6) 긴급통신제한조치
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, 범인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인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

### ① 긴급감청

㉠ 검사지휘

㉡ 긴급감청 집행

### ② 사후허가. 사후통보



### ③ 집행대장 기재 및 통보

#### ㉠ 집행대장 기재

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집행 대장에 기재하고 3년 동안 비치하고,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사본을 3년 동안 보존

#### ㉡ 통보

공소제기,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



## 7)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

### ① 요건

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



## ② 절차

㉠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㉡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,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·단체와 외국인,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의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군용전기통신(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)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
## ㉔ 기간

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함

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

## ㉕ 긴급통신제한조치

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 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장관(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)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이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 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

## 8)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

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- 절차

- 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
- ②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
- ③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



## 8. 수사상 감정유치

감정유치라 함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

### 1) 감정유치의 대상

피의자를 대상

### 2) 감정유치의 요건

감정유치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



### 3) 청구권자

청구권자는 검사

### 4) 집행

경찰서장이 집행한다

### 5) 해제

감정의 완료 또는 유치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제

### 6) 구속집행정지

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다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한다.



## 9. 기타

### 1) 증거보전의 청구

수사상의 증거보전이라 함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수사절차에서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것

### 2) 청구권자

청구권자는 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



## 1) 증인신문의 청구

증인신문의 청구라 함은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

## 2) 청구권자

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, 피고인도 청구권자로 하고 있음.

